

광역도서관위원회 운영실태 분석을 통한 활성화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Activation Plan through the Analysis of the Operation Status of the Metropolitan Library Committee

김 보 일 (Bo il Kim)**

목 차

- 1. 서 론
- 2. 현행 광역도서관위원회 관련 법제적 진단
- 3. 광역도서관위원회 운영 실태조사
- 4. 광역도서관위원회 운영 개선을 위한 표적집단면접
- 5. 광역도서관위원회 운영 개선 방안 제안
- 6. 결론

초 록

이 연구에서는 지역도서관 정책 추진에 따른 주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운영 개선을 위해 지역도서 관 정책의 중심축에 따라 두 가지 개선 모델을 제안하였다. 제1안의 모델은 본청 내 도서관 정책부서 중심으로 광역도서관 정책 추진에 따른 광역도서관위원회 도서관 정책 심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으며, 제2안의 모델은 광역대표도서 관 중심의 지역도서관 정책 추진에 따라 광역도서관위원회는 정책 거버넌스 역할을 하도록 제안하였다. 제안한 광역도서관위원회 운영 개선 방안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서는 제2안에 따라 「도서관법」에서의 광역도서관위원회 기능과 위원장 및 부위원장에 대한 격상이 필요하다. 그리고 광역지방자치단체별 광역도서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표준화된 자치법규로 규정될 수 있도록 표준 자치법규(안)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proposed two improved models, depending on each central axis of local library policies, to improve the management of the metropolitan library committee which should play an important role in pursing the policies. The model of draft 1 suggested that the metropolitan library committees library policy deliberative functions be reinforced for pursuing metropolitan library policies, around the department of library policy in each central office. The model of draft 2 suggested that the metropolitan library committees play a role in the policy governance, in pursuing the metropolitan representative libraries-based local library policies. In order to efficiently pursue the proposed improvements of the management of the metropolitan library committees, the functions of the metropolitan library committees and each status of the chairmen and the vice chairmen, which are stipulated by Library Act, need to be elevated, according to the draft 2. Then a local laws and regulations (draft) was proposed to stipulate matters concerning the management of metropolitan library committees by metropolitan municipalities, based on the local laws and regulations.

키워드: 광역도서관위원회, 광역대표도서관, 지역도서관 정책, 도서관법, 자치법규 Metropolitan Library Committees, Metropolitan Representative Library, Local Library Policies, Library Act, Local Laws and Regulations

^{*}이 논문은 2021년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광역도서관위원회 실태조사'로 수행된 결과를 발췌·요약한 것임.

^{**} 한남대학교 문과대학 문헌정보학과 조교수(kimboil1979@hnu.kr / ISNI 0000 0004 6815 1032) 논문접수일자: 2022년 1월 18일 최초심사일자: 2022년 2월 3일 게재확정일자: 2022년 2월 13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6(1): 175-199, 2022. http://dx.doi.org/10.4275/KSLIS.2022.56.1.175

^{**} Copyright © 2022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1. 서 론

1.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006년 10월 4일 전부 개정된 「도서관법」(법률 제8029호)은 이전 관련 법과는 달리 제도적틀을 통해 도서관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큰전환점으로 작용되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도서관 정책의 중심조직 으로서 대통령 소속 국가도서관위원회(현. 도 서관정보정책위원회) 설치와 '도서관발전종합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새로운 도서관 정책의 추진체계가 마련되었으며, 도서관발전종합계 획의 시행계획을 법제화함으로써 도서관 정책 마련하여 시행하는데 주요한 동력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가도서관 정책의 수립ㆍ집 행과 관련하여 국가도서관위원회가 관련 사항 을 심의·의결하도록 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의 도서관 정책에 대한 결정을 위해 광역도서관 위원회(현,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를 설 치하여 주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특 히. 광역시 · 도가 도서관 시책과 관련된 서비스 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광역대표도서 관(현, 지역대표도서관)을 설립 · 운영하도록 하 고 있으며, 광역시 · 도의 관할 지역 내에 있는 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식정보격차의 해 소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광역도서 관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즉, 광역도서관 위원회로 하여금 기초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 작되는 지방자치단체 도서관 정책을 견인하여 균형적인 정책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주 요 사항을 심의하고 도서관위원회협의회[(가칭) 현,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협의회]와 실무협의 회를 통해 광역도서관정책과 국가 도서관정책 간의 조정자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이렇듯 도서관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 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도서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광역도 서관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에 지방도서 관정보서비스위원회는 「도서관법」을 통해 제 12조(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설치) 및 제22조 (지역대표도서관) 등과 함께 동법 제24조(지 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의 설치 등)이 규정 됨에 따라 법적 설치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러 나 현재 2021년 12월 7일 전부 개정된 「도서관 법_(법률 제18547호)를 통해 도서관정보정책 위원회는 '국가도서관위원회'로 개칭되고, 지역 대표도서관은 '광역도서관' 그리고 지방도서관 정보서비스위원회는 '광역도서관위원회'로 개 칭됨에 따라 이를 준용하여 적용하여 기술하고 자 한다.

하지만 광역도서관위원회가 「도서관법」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법적 기구에도 불구하고 2008년 9월 경기도를 시작으로 2021년 5월 말 기준으로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세종·강원·충북을 제외한 14곳에서만 광역도서관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다. 이 가운데 8곳은 법적 설치근거가 마련된 지 10년이 지나서야 설치된 것으로 조사되어 그동안 국가 단위 도서관 정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도서관 정책에 대한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법적 근거에 따른 설치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제대로 광역도서관위원회의 현황 및 운영 내용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광역도서관위원회 간 정책협의를 위한 도

서관위원회협의회 구성에 따라 필요한 일반적인 현황을 조사한 것이 전부이다.

선행 연구에서도 광역도서관위원회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 다만, 광역도서관 관련 연구 가운데 광역도서관의 업무 및 협력 수준에서 연구되고 있다. 관련한 주요 선행 연구로 김세 훈, 심효정(2008)은 광역도서관 업무 추진 방향 에서 정책지원 영역의 업무로 광역도서관위원 회 업무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윤희윤(2017)도 광역도서관 위상 및 운영의 정상화 방안으로 광역도서관으로서의 업무로 광역도서관위원회 업무 · 활동 지원을 추가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 다. 이외 배순자(2008)는 지역공공도서관에 대 한 지원과 협력사업으로 통합과 조정의 역할로 광역도서관위원회를 통한 지역공공도서관의 정 책공조를 제시하였다. 한복희 외(2010)는 광역 도서관 중심의 도서관 협력체계 차원에서 지역 도서관 정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도하도록 하기 위해 광역도서관위원회를 담당하도록 제 안하였다. 이러한 선행 연구를 통해 보면 광역 도서관위원회는 지역도서관 정책 추진 기관임 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원 또는 지역도서관 정 책을 시행하는 광역대표도서관 중심으로만 연 구되고 있으며, 광역도서관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운영 개선을 통하여 지역도서관 정책 추진에 따른 주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도서관법」에 따라 법적 설치 기구로서 광역도서관위원회에 대한 법제 적 진단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뿐만 아니 라 광역도서관위원회 관련 전문가 및 광역대표 도서관 관장들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광역도서 관위원회의 운영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 자 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이 연구는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위상 정립과 역할 강화를 위한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아래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단계별로 진행하였다.

첫째, 문헌자료 조사를 통해 설치근거, 구성, 역할과 기능,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등을 중심 으로 광역도서관위원회와 관련한 「도서관법」 및 도서관 관련 지방자치법규 조사 분석. 도서 관위원회협의회 운영규정, 광역도서관위원회 운 영규정을 조사 분석함으로써 법제적 진단을 실 시하였다.

둘째, 현재 단계 광역도서관위원회 실태조사 를 실시하였다.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광역 도서관위원회 현황으로 17개 광역시 · 도 광역 도서관위원회의 일반 현황에 대해 설치 현황, 설치 시기, 설치 근거 등을 조사하였으며, 17개 광역시 · 도 광역도서관위원회 운영실태에 대 해 위원회 구성, 주요 기능, 회의 개최, 주요 심 의 내용, 관련 자치법규 등을 조사하였다.

셋째, 관계 전문가 의견 및 실무협의회 담당 자 의견을 수렴하였다. 전문가 대상으로는 광 역도서관위원회 관련 학계 및 관계 기관 전문 가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위한 인터뷰를 진 행하였다. 그리고 도서관위원회협의회 실무협 의회 담당자는 광역대표도서관 관장을 대상으 로 의견 수렴을 위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다 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면대면 표적집단면접 (FGI) 진행의 어려움으로 서면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내용으로는 광역도서관위원회 운영을 위한 추진체계 및 구성, 광역도서 관위원회 기능과 역할, 광역도서관정책 추진에 따른 광역대표도서관과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운영 관계, 도서관위원회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 의견, 광역도서관위원회 운영 개선을 위한 방안 등으로 구성하였다.

넷째, 이상의 단계별 연구를 통하여 광역도 서관위원회 운영 개선 방안 도출하였다. 개선 방안은 광역도서관위원회 운영 개선 방안(운영 개선 모델), 광역도서관위원회 관련 법제도 개 선 방안(「도서관법」, 자치법규, 행정조치)으로 구분된다

2. 현행 광역도서관위원회 관련 법제적 진단

2.1 법리적 위상 격하

「도서관법」에 따르면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설치와 관련하여 동법 제17조(광역도서관위원회의 실치 등)에 따르면 제1항을 통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시·도"라 한다)는 관할지역 내에 있는 도서관(이하"지역도서관"이라 한다)의 균형발전과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역도서관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광역도서관위원회는 당해 관할지역 내에 있는 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식정 보격차의 해소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위하여 설립되었으며, 구성에 관하여 「도서관법」을 통해 규정되고 있다. 주요 사항으로 광역도서관위원회의 구성에 대해「도서관법」제17조제3항에 따르면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하고 있다. 그리고 당해 관할지역의 도서관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책임성과위원회의 위상을 고려하여 2006년 10월 4일 전부 개정된「도서관법」(법률 제8029호)에서 위원장에 대하여 당해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반인 '시·도지사'로 규정되었다. 이외 부위원장은 광역대표도서관장이 되며 위원은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각종 위원회 위원장 수행에 대한 업무 상 과중으로 실제적 인 광역도서관위원회 위원장 업무수행 및 위원 회 운영에 제한이 있다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참고하여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 을 부시장·부지사로 하향 조정하는 안이 제시 되었다. 개정안에 대하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 광위원회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동 위원회 의 심사보고서1)에 따르면 광역도서관위원회 위원장의 직위를 하향 조정하는 것은 위원회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현실적 조치이나 '시 장과 도지사'로 하여금 지방도서관 정책을 심 의하고 총괄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 애초의 취지는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에 2016년 2월 3일 일부 개정된 「도서관법」 (법률 제13960호)을 통해 광역도서관위원회

¹⁾ 의안정보시스템. (2021.12.27.)

위원장 선임과 관련하여 부시장 • 부지사(해당 시 · 도에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2명 이상인 경 우에는 해당 시 · 도지사가 지명하는 자를 말한 다)로 하향하여 규정하게 된다.

따라서 지역도서관 정책 추진을 위하여 법리 적 위상에 따라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을 당해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반인 '시·도 지사'가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역 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현행「도 서관법 에서는 '부시장 · 부지사'로 하향 조정 되면서 격하되었다.

2.2 기능과 역할의 재정립 필요

광역도서관위원회는 〈표 1〉과 같이 「도서관 법」제17조 제1항에 따라 당해 관할 지역 내에 있는 도서관의 균형발전과 지식정보 접근권 보 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동법 제 17조 제2항에 따르면 광역도서관위원회는 지 역도서관의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지역도서관 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 소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지역도서관 정책을 위 하여 광역도서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도서관법」시행령 제5조(도서관정보 정책위원회 심의·조정사항)을 보면 제2호에 따라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지방도서관정보 서비스위원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보면 동일한 「도서관법」에 근거 하고 있지만 광역대표도서관과 광역도서관위 원회의 별개 기관으로서 각각의 기능을 수행하 기 위한 역할 측면에서 구분되고 있다. 광역대 표도서관은 관할지역의 도서관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관련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가 지정 또는 설립한 공립 공공도서관이다. 반면, 광역도서관위원회는 지 역도서관의 균형발전과 지식정보 접근성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해소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하기 위한 기구이다.

그리고 「도서관법」 시행령에 따르면 도서관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시 · 도지사는 매년 11월 30일 까지 당해 관할지역의 도서관발전종합계 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거쳐 도서관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되 어 있다. 이에 대해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르 면 시ㆍ도에서는 작성된 시행계획안에 대해 반 드시 '광역도서관위원회'의 회의 및 사전 내부 심의 등을 거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지역도서관 정책 심의 기 구로서 역할을 포함하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 으나 규정된 내용에는 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 된다.

이와 관련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자 치법규를 통해 보면 광역도서관위원회 기능 또 는 심의사항과 관련한 규정에서 도서관발전종 합계획의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 사항에 대해 광역지방자치단체별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대구의 경우 『도서관법』에서 규정하고 있 는 위원회의 심의 사항 외에 도서관발전종합계 획에 대한 시행계획과 독서문화진흥계획에 대 한 시행계획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인천 의 경우 「도서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 의 심의 사항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반면,

〈표 1〉광역도서관위원회 법적 설치 근거:「도서관법」

도서관법 2021년(현행)

제17조(광역도서관위원회의 설치 등) ① 특별시ㆍ광역 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는 관할지역 내에 있는 도서관(이하 "지역도서관"이라 한 다)의 균형발전과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역도서관위원회 를 둔다.

- ② 광역도서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지역도서관의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 2. 지역도서관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 소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지역도서관 정책을 위하여 광역도서관위원회에 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광역도서관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위원장은 부시장·부지사(해당 시·도에 부시장 또는 부지 사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자를 말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25조에 따른 광역대표도서관의 장이 되며, 위원은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 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 · 주재한다.
- ⑥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직무를 대행 하게 할 수 있다.
- ⑦ 그 밖에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도서관법 시행령2)

제5조(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심의·조정사항) 법 제12조 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말한다.

- 1. 도서관 운영 및 이용 실태에 관한 사항
- 2. 법 제24조에 따른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와의 협력 에 관한 사항 ……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15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 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도서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해의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정하고, 이를 9월 30일까지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 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제1항의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을 거쳐 도서관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충남의 경우 위원회의 기능으로서 심의 사항에 관한 내용이 별도로 규정되지 않고 있다. 광역 도서관위원회의 회의 일정에 대해서도 회의 개 최에 대한 규정 이외에 시기에 대해서는 별도 로 규정되지 않거나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 는 것으로 규정되고 있어 사실상 법적으로 규 정된 사항에 대한 실제적인 심의가 불가능하다.

한편, 광역대표도서관 설치에 관한 「도서관법」 제17조의 위치를 살펴 보면 '제2장 도서관발전 종합계획의 수립 등' 아래에 국가도서관위원회 관련 규정과 함께 위치하고 있으며, 광역대표도 서관의 관장은 「도서관법」 제17조 제4호에 따라 광역도서관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규정된다. 즉.

광역도서관위원회가 광역대표도서관 산하 운영 위원회 성격의 기구가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의 도서관 정책 기구인 국가도서관위원회와 함께 도서관 정책 심의 기구로서 지역도서관 정책을 심의하는 역할로 판단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광 역도서관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법률에 근거하여 재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도서관법」에 근거하여 관련 자치법규의 위치 및 내용이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법」 광 역도서관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근거로 자치법규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

²⁾ 동법 시행령은 전부개정 「도서관법」(2021년 12월 7일) 공포 1년 후 2022년 12월 8일에 시행된다.

를 위해서는 표준조례(안)를 통해 광역도서관 위원회 운영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별 공통사항 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2.3 운영 내실화를 위한 체제 정비

광역도서관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은 법률 적으로 마련되었으나 운영을 위한 사항에 대해 서는 법률적 근거가 부족하다.

광역도서관위원회와 관련한 법률적 규정은 「도서관법」상 1개 조항(제17조)이며, 「동법 시 행령」을 통해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현, 국가 도서관위원회) 심의 · 조정사항으로 제5조 제2 항에서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현, 광역 도서관위원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 고 있는 것이 전부이다. 이외 광역도서관위원 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는 광역도서 관위원회에 관한 사항에 있어 「도서관법」에 근 거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운영에 관한 내용에 있어 구체적인 사항으로 명시되지 않고 있다. 또한, 실제 광역도서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 항은 지방자치단체별 각종 위원회 관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별도의 조례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보면 광역도서관위원회의 법 적 설치 근거는 있으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도서관법」과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로 규정된 사항이 구체적이지 않고 지방자치단 체별 내용의 차이 등에 따른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

한편, 국가도서관위원회 설치에 따라 도서관 정책의 수립ㆍ집행과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지

방자치단체 간 정책 협의, 교류 · 협력 및 법 · 제도 개선 건의 등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도서 관위원회협의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설 치 근거로 「도서관법」 제11조, 제17조 및 「동 법 시행령」제5조 제2호를 따르고 있다. 그러나 「도서관법」에서는 광역도서관위원회에 대한 설치만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서는 설치에 대한 사항이 아니라 국가도서관위원회 심의 · 조정 사항으로 광역도서관위원회와의 협 력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국가도서관위 원회는 예규 제4호로 「도서관위원회협의회 운 영규정」을 규정하여 국가도서관위원회와 광역 도서관위원회 간 정책협의를 통하여 주요 정책 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 요 내용으로 도서관위원회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고 있다. 그리고 원활한 논의를 지원하기 위 하여 협의회에 정책 실무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도서관위원회협의회 운영규정」을 통해 보 면 구성에 있어 의장은 국가도서관의원회 위원 장이 되며, 위원은 관계 부처 고위공무원과 광 역도서관위원회 위원장으로 규정되어 있어 협 의회와 관련한 업무가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사 무에 해당한다. 그러나 도서관위원회협의회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간 정책 협의를 위한 주요한 창구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운 영에 관하여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지 못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광역도서관위원회와 관련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도 전혀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다만, 서울의 경우 실무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광역도서관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

을 위해서는 법률을 통한 운영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근거로 지방자치법 규로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도서관위원회협의회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도서관법」을 통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야 하며, 광역도서관위원회의 기능과 역할로서 도서관위원회협의회에 관한 사항이 함께 규정하도록 해야 한다.

2.4 시사점

광역도서관위원회와 관련하여 「도서관법」, 「도 서관법」 시행령,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자 치법규 등의 분석을 통해 현재의 광역도서관위 원회에 대한 진단을 한 결과 위원회의 법리적 위상 격하와 운영에 따른 실체적 한계를 나타 내었으며, 기능과 역할의 재정립이 필요한 것 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위원회의 운영 내실 화를 위한 체제의 법적 근거가 취약한 점을 발 견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광역도서관위원회의 법제적 근거와 내용을 개선하기 위한 시사점으로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위상을 고려하여 위원장을 부시장・부지사에서 시장・도지사로 재상향할 필요가 있다. 광역도서관위원회는 당해 지역의 도서관 정책을 포괄적으로 심의하는 기구로서 위원회의 위상은 도서관과 관련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기구로서의역할과 중앙행정기관 과의 정책적 협의 등을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이에 위원장은 「도서관법」과 당해 지역의 자치법규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위원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해

당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반인 시장·도지사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시장·도지사의 위원장 규정에 따라 예상되는 실제적인 위원회 운영에 관한 어려움은 부위원장 선임과 운영의 효율성을 위한 실무위원회 내지실무협의회 운영 등을 통해 보완 가능하다. 따라서 「도서관법」과 광역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를 통해 광역도서관위원회와 관련하여 위원장의 시장·도지사 선임에 관한 사항, 부위원장의 광역대표도서관 관장 외 관계 행정기관공무원 중 선임에 관한 사항, 위원회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소속 실무위원회 등에 관한사항 등을 반영한 개정이 필요하다.

둘째, 광역도서관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재정립을 위해 「도서관법」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자치법규의 위치와 세부 사항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이에 광역도서관위원회는 「도서관법」 제17조에 따라 주요 지방도서관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해야 하는 법적 기구이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를통해 광역도서관위원회와 광역대표도서관과의관계 정립, 위원회 주무 부서에 대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일원화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도서관법」에 따른 광역도서관위원회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그에 따른 기능과 역할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광역도서관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체제 정비가 필요하다. 「도서관법」에 따라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자치법규를 통해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조항을 도서관 관련 자치법규 또는 별도의 독립된 자치법규를 통해 규정

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도서관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2021년 5월 31일 기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14곳(82.4%)에 설치 및 운영하고 있으며, 3곳(17.6%)에서는 미설치하고 있는 것으로조사되었다. 따라서 광역도서관위원회를 통한심의를 통해 지역도서관 정책의 중앙행정기관으로 보고 될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미설치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치 및 운영을 독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뿐만아니라 위원회의 운영을 효율적이며 실제적인운영을 통한 활성화가 되도록 도서관위원회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도서관법」과 광역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3. 광역도서관위원회 운영 실태조사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국가도서관위원회가 2021년 5월 31일 기 준으로 수집한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광역 도서관위원회 관련 현황과 법제처 국가법령정 보센터를 통해 「도서관법」에 따라 위원회 운영 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자치법규를 조사해 분 석하였다.

3.1 광역도서관위원회 일반 현황

3.1.1 설치 현황

광역도서관위원회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2021 년 5월 31일 기준 현재 광역도서관위원회를 설 치·운영 하고 있는 곳은 14곳(82.4%, 서울·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 기·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이며, 설치하지 않고 있는 곳 3곳(17.6%, 세종·강원·충북)으로 나타난다.

법적 설치 근거가 마련된 지 1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광역도서관위원회를 설치 ·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것은 당해 관할 지역의 도서관 정책을 마련하고 심의하여 시행함으로써 도서관의 균형적인 발전과 지식정보격차 해소하는 것에 관한 사항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조속한 시일 내광역도서관위원회의 설치 · 운영을 통해 관할지역의 도서관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필요한주요 사항을 심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1.2 설치 시기

광역도서관위원회 설치 시기는 위원회가 설치 된 14개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6곳(42.9%, 서울·인천·광주·대전·경기·전남)이 2016년「도서관법」개정 이전에 설치한 것으로 나타나며, 8곳(57.1%, 부산·대구·울산·충 남·전북·경북·경남·제주)은 이후에 설치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도서관법」 개정 이후에 광역도서관 위원회를 설치한 8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광역 도서관위원회가 법적 설치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마련된 지 10년이 지나서야 위원회를 설치한 것이다.

3.1.3 설치 근거

광역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법」 제17조 제7 항에 근거하여 광역도서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치법규로 정하고 있다. 광역도서관위 원회의 설치 근거가 되는 자치법규 현황을 살 펴보면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모두 자치법규 를 통해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자치 법규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도서관 및 독서 관련 자치법규 내 광역도서 관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곳은 10곳(58.8%,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세종・경기・강원・충남・제주)이며, 광역대 표도서관 관련 조례에 해당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곳이 6곳(35.3%, 울산・충북・전북・전남・경북・경남)이다. 이외 광역도서관위원회 관련 독립된 자치법규를 규정하고 있는 곳이 1곳(5.9%, 대전)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세종, 강원, 충북은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관련법과 자치법규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위원

회 설치가 되어 있지 않으며, 울산,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은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업무가 광역대표도서관의 사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광역대표도서관 관련 자치법규를 통해 규정하 고 있어 당해 업무에 대한 주무 부서의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3.2 광역도서관위원회 운영 실태

3.2.1 위원회 구성

광역도서관위원회는 「도서관법」 제17조 제3 항~제6항에 근거하여 자치법규에 따라 위원 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과 위원 인원, 위촉 위원에 관한 자격 사항 등을 규정하 고 있다.

〈丑 2〉	시・	도별	광역도서	관위원회	회 현황
-------	----	----	------	------	------

구분 지역		설치		설치시기		설치 근거
	지역	현	현황		면 기준)	(자치법규)
		유	무	이전	이후	(四个) 日日/
1	서울	0		0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6조
2	부산	0			0	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14조~제18조
3	대구	0			0	대구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10조
4	인천	0		0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5	광주	0		0		광주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16조
6	대전	0		0		대전광역시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7	울산	0			0	울산광역시 대표도서관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
8	세종			-	-	세종특별자치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10조
9	경기	0		0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4조
10	강원			-	-	강원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7조
11	충북			-	-	충청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
12	충남	0			0	충청남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6조
13	전북	0			0	전라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14	전남	0		0		전라남도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15	경북	0			0	경상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
16	경남	0			0	경상남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
17	제주	0			0	제주특별자치도 도서관 진흥 및 대표도서관 설립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계		14	3	6	8	

이에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광역도서관위 원회 실태를 조사한 결과 첫째, 위원장은 「도서 관법」에 따라 14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모두 부시 장 · 부지사를 선임하고 있으나 부위원장은 경 기도와 전북을 제외하고 당해 광역지방자치단체 의 광역대표도서관 관장을 선임하고 있다. 경기 도의 경우 현재 광역대표도서관으로 수원 선경 도서관을 지정하고 있으나 실제적인 광역대표도 서관의 업무는 경기도 내 도서관정책과와 경기 도사이버도서관에서 분담하여 진행하고 있어 부 위원장으로 광역대표도서관장이 아니라 도서관 정책과 소관 국(局)인 평생교육국장을 선임하 고 있다. 그리고 전북은 문화체육관광국장이 전 북의 대표도서관으로 지정된 전북도청도서관의 관장을 겸직하고 있다. 광역도서관위원회가 설 치되지 않은 곳의 사유로는 광역대표도서관의 미지정으로 위원회 설치 필요성이 부족하거나 설치에 따른 한계 등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광역도서관위원회의 구성 인원은 동법 제17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도서관위원회는 위 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 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가 구성된 14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인원은 13.9명이며, 당연직 3.8명과 위촉직 10.1명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위원회 위원으로는 당연직과 위촉직으 로 구분하고 있다. 당연직에 관한 사항은 위원 장과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 이외 「도서관법」 상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조사에 따 르면 관련 자치법규를 통해 당해 광역지방자치 단체에 따라 교육청 도서관 업무 담당 국장・ 과장과 광역대표도서관 담당 본부장·국장· 과장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하여 부위원장의 직급 보다 상위 직급의 당연 직 위원을 구성하고 있는 곳은 서울, 부산, 광주 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경기는 광역대표도서관 을 지정 운영하고는 있으나 실제적인 역할은 본청 내 도서관정책과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 고 있어 관할 조직인 국(局)인 평생교육국장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다. 그러나 부위원장은 위원장 부재 시 대리하여 위원회를 운영한다 점에서 위원 구성 위계상 당연직 위원에 대한 규정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 위촉직의 경 우 「도서관법」에 따라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 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종별 전문가, 학 계 및 현장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광역도서관위원회는 「도서관법」제17 조 제2항에 따라 지방도서관의 균형적발전에 관한 사항과 지방도서관의 지식정보격차 해소 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에 따라 도서관 관종별 협력을 고려하여 위원 구성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시ㆍ도별 광역도서관위원회 도서관 협력 관련 분야 현황 을 살펴보면 14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교육청 14곳(100.0%), 공공도서관 11곳(78.6%), 대학 도서관 8곳(57.1%), 학교도서관 5곳(35.7%), 전 문도서관 4곳(28.6%), 작은도서관 9곳(64.3%). 취약계층 7곳(50.0%) 으로 나타났다. 또한 광 역지방자치단체별로 보면 서울만 도서관 협력 관련 전분야를 포함한 위원 구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2.2 주요 기능

광역도서관위원회는 「도서관법」 제17조 제2

항에 근거하여 지방도서관의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지방도서관의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지역도서관 정책을 위하여 광역 도서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의 심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를 근거로 광역도서관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3곳을 포함해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자치 법규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한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도별 광역도서관위원회 관련 자치법규 내 광역도서관위원회의 기능 규정 여부를 조사한 결과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12곳 (70.6%)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5곳(29.4)은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둘째, 자치법규를 통해 광역도서관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 12곳 중 주요 내용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도서관법」 으로 규정하고 있는 도서관 균형발전과 지식정 보격차해소에 관해서는 각각 12곳(100.0%)에 서 모두 규정하고 있다. 이외 광역대표도서관 운영에 관해서는 8곳(66.7%) 규정하고 있으 며, 다음으로 도서관발전종합계획 6곳(50.0%), 도서관 평가 3곳(25.0%), 독서문화진흥계획 1곳(8.3%)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광역도서 관위원회의 기능과 관련해 법률상에 규정된 광역도서관위원회의 기능을 중심으로 자치법 규에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도서관 정책에 해 당하는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대해서는 6곳 에(50.0%)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원회가 당해 지역도서관 정책을 포괄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기 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치법규 내 위원회의 규정으로 보다 명확한 사항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3.2.3 회의 개최

광역도서관위원회 운영에 관해서는 광역지 방자치단체 자치법규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치법규를 통해 회 의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다. 광역지방자치단 체의 자치법규에 따르면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 시회의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위원 회가 설치된 14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위원회 회의 개최와 관련한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자치법규를 통해 위원회 정기회의와 관련하여 개최 횟수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곳은 11곳(64.7%)이며 이 가운데 4곳(23.5%)은 연간 1회 이상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나머지 7곳(41.2%)는 연간 1회 개최하도록 규정되고 있다. 또한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6곳(35.3%)은 자치법규를 통해 회의 개최 횟수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둘째, 최근 2년(2019년~2020년) 동안 대면 · 비대면 포함해 광역도서관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을 보면 2019년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는 14 곳 중 11곳(78.6%)이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2020년에는 9곳(64.3%)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조사된다. 다만, 대구는 위원회가 2019년 12월에 설치되었으며, 경북은 2020년 1월에 설치되어 회의 개최 실적이 당해 기간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천은 2010년 4월에 위원회가 설치되었음에도 최근 2년동안회의 개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셋째, 국가도서관위원회를 통해 제공받은 각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에 대하여 주요 안건을 분석한 결과 위원회를 설 치하고 있는 14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안건으 로 가장 많이 심의한 사항은 「도서관법」제15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며 11곳(78.6%)에서 심 의하고 있다. 이외 당해 광역대표도서관의 주요 사업 실적 및 계획이 5곳(35.7%), 광역대표도 서관 건립 4곳(28.6%), 광역대표도서관 운영규 정 · 공공-작은도서관 협력 · 도서관 평가에 대 해 각각 1곳(7.1%)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 서관법」과 관련한 지방자치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의 기능으로 심의해야할 내용을 충 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다.

3.2.4 관련 자치법규

「도서관법」 제17조 제7항에 따라 광역지방 자치단체는 광역도서관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치법규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 다. 이에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앞서 조사 한 결과에서와 같이 도서관 및 독서 관련 자치 법규, 광역대표도서관 관련 자치법규, 독립된 자치법규 등에 따라 당해 지역도서관 정보서비 스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광역도서 관위원회에 관한 자치법규 내용을 주요 조항별 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광역도서관 위원회와 관련하여 별도의 자치법규를 제정하고 있는 대전을 제외하고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는 위원회 관련 자치법규 내 독립된 장을 통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울산, 충 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은 위원회 관련 사무가 광역대표도서관의 업무가 아님에도 광역대표도 서관 관련 자치법규 내에 위원회 관련 사항을 규 정하고 있다. 이들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도서관 관련 자치법규 없이 광역대표도서관에 관한 자 치법규만 제정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된다.

둘째, 광역도서관위원회 관련한 자치법규 조항 으로 위원회 회의 구분과 시기 등에 관한 사항・ 위원회 참석 수당 • 여비가 각각 17곳(100.0%) 에서 모두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설치 및 목 적과 위원회 위원 임기가 각각 16곳(94.1%). 위 원회 운영에 따른 간사 및 서기가 15곳(88.2%), 위원 구성 13곳(76.5%), 위원회 기능 및 심의 가 12곳(70.6%), 세부 운영 규정 및 세칙이 11 곳(70.6%), 의원 해촉이 10곳(58.8%), 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직무가 9곳(52.9%) 순으로 많 은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반면, 위원회 심의 시 위원의 제척 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곳은 2곳(11.8%)로 가장 적었으며, 다음으로 위원회 운영에 따른 관계자 의견청취가 3곳(17.6%) 순으로 나타났 다. 특히, 위원회 설치 및 목적, 기능 및 심의, 위원회 구성, 위원회 회의, 위원회 위원장의 직 무에 관해서는 「도서관법」에서 광역도서관위 원회와 관련해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 가 운에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모 든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사항을 자치법 규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황을 통해 볼 때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도서관 법」에 광역도서관위원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수준이 제각각이며, 필수적으로 규정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자치법규로 규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주요 조항 구분 지역 위치 위원 위원장 위원 위원 간사/ 의견 수당/ 운영 목적 설치 구성 회의 심의 직무 제척 등 해촉 서기 청취 여비 세칙 제2장 도서관정책의 수립 및 추 서욱 0 1 0 \bigcirc 0 진체계 부산 제6장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2 \bigcirc 제4장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3 대구 4 인천 제3장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0 0 0 0 0 0 0 0 제5장 광주광역시 도서관정보서 5 광주 0 0 0 0 0 0 0 0 0 비스위원회 대저 6 \bigcirc 제3장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7 울산 0 0 0 제4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서관정 세종 8 \bigcirc \bigcirc \bigcirc \bigcirc \cap 보서비스위원회 제2장 경기도 도서관정보서비스 9 경기 0 0 0 0 0 위원회 제3장 강원도 도서관정보서비스 10 강원 0 0 위원회 제3장 충청북도 도서관정보서비 충북 0 11 0 스위원회 제3장 충청남도 도서관정보서비 12 충남 0 0 0 스위원회 13 전북 제3장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0 0 0 0 0 제3장 전라남도 도서관정보서비 전남 14 0 0 스위원회 제3장 경상북도 도서관정보서비 경북 0 15 0 0 스위워회 제3장 경상남도 도서관정보서비 16 경남 0 스위원회 제4장 제주특별자치도도서관정 제주 17 \bigcirc \bigcirc \bigcirc \bigcirc \cap \cap 보서비스위원회 계 15 12 13 17 16 9 2 10 15 3 17 11

〈표 3〉시·도별 광역도서관위원회 관련 자치법규 현황

3.3 시사점

광역도서관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기초 현황 과 운영실태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 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운영을 위해서는 위원 구성에 있어 당연직 위원 간 원활한 업무 협조 및 위원 활동을 위해 동일한 수준의 직급으 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앞서 광역도서관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에서와 같이 현재 서울, 부산, 광 주의 경우 당연직 위원 중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의 직급이 광역대표도서관장 직급 보다 높으며, 이외 대구, 경기, 전북의 경우 광역대표도서관 건립에 따라 관장의 직급이 변경될 수 있다. 이 에 위원회 부위원장인 광역대표도서관 관장의 직급이 현재와 같이 광역대표도서관의 조직 및 시설 규모인 점을 고려할 때 광역지방자치단체 과장급에 준하므로 당연직 위원의 직급 즉 관계 행정기관 국장급 공무원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 요하다. 다만 광역대표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을

위해서는 현재의 과(科) 단위 사업소 수준에서 는 제역할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이에 국(局) 단위 조직 확대 개편을 통한 운영 이 필요하며, 이때 광역도서관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행정기관 국장급 공무원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정체성에 따른 해 당 위원회의 주무 담당 부서를 명확히 해야 한 다. 현재는 위원회 업무에 대하여 위원회를 설 치하고 있는 14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6곳 (42.9%)은 본청 내 도서관 정책 담당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8곳(57.1%)은 광역대표도서 관에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는 「도서관 법」상에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정체성과 관련하 여 명확하게 규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광 역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상이한 해석을 바탕으 로 해당 업무를 분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도서관법」에서는 광역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 회(현 광역도서관위원회)를 제2장 도서관발전 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규정 아래 국가도 서관원회에 관한 사항 다음으로 규정함으로써 도서관 정책 업무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다.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를 통해 광역 도서관위원회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치법규 를 통해 분명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제역할을 위해 다 양한 관종의 의견을 바탕으로 지역도서관 정책 을 심의 할 수 있도록 위원 구성 가운데 위촉직 위원의 선임에 있어 이를 반영한 위원 구성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현재 광역도서관위원회 는 「도서관법」에 따라 지역도서관의 균형발전 과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 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으로써 지역도서관 정 책의 포괄적인 심의 기능을 내포하고 있다. 이 를 위해서는 지역 내 소재하고 있는 다양한 관 종의 도서관에 대한 포괄적인 의견 수렴 및 반 영을 위한 창구로써 위촉직 위원 선임에 있어 관종별 안배를 통한 위원 선임이 필요하다. 앞 서 광역도서관위원회 위원 구성에서 도서관 협 력을 위한 관련 분야에 대한 현황에서 위원회 를 설치하고 있는 14곳의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전 관종을 포용하는 측면에서 위촉직 위원을 구성하는 곳은 서울 뿐이며, 지식정보격차해소 를 위한 주요한 대상인 취약계층 고려한 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7곳(50.0%)에서만 관련하여 위원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학교도서관은 5곳(35.7%)이며 전문도서관 4 곳(28.6%)에서 관련한 위원 구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위촉직 위원의 구성 에 있어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함께 대표성을 고려하여 위원 구성을 할 필요가 있다.

넷째,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광역도서관위원회 와 관련한 자치법규를 통해 「도서관법」에 규정 된 지역도서관 정책에 대한 심의 기능을 수행하 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 할 필요가 있다.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의 광역도서관위원회 기능 및 내용에 관한 현 황을 통해 보면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도서관 균형발전과 지식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내용 중 심으로 주요 기능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나며, 부산, 대전, 충북, 충남, 경남은 자치법 규로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 규정하지 않고 있 다. 이는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는 14곳의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회의 개최 실적에서와 같이 회 의 주요 안건으로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대한 심의가 11곳(78.6%)로 가장 많으며 이외는 주 요 사업 실적 및 계획 5곳(35.7%), 광역대표도 서관건립 4곳(28.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를 통해 광역 도서관위원회 기능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회의 안건으로 관련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도서관법」에서 규정한 광역도서관 위원회의 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회와 관련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 규를 정비할 필요하다. 앞서 광역지방자치단체 의 광역도서관위원회 관련 자치법규 현황에서 와 같이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자치법규를 통한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차이를 보 이고 있다. 그리고 부산, 대전, 충북, 충남, 경남 은 자치법규에서 「도서관법」에서 규정하고 있 는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심의 기능에 관해서 조 차 제대로 규정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광역도 서관위원회의 정체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기 능 및 심의에 관해서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12곳(70.6%)만이 관련 자치법규로 규정하 고 있다. 따라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도서관 법」에 따른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 한 사항을 자치법규로 규정함으로써 운영을 개 선할 수 있도록 표준 자치법규(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일반적인 운영에 관해서는 광 역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한 자 치법규를 준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4. 광역도서관위원회 운영 개선을 위한 표적집단면접

광역도서관위원회 운영 개선 방안 마련을 위

하여 전문가 그룹과 광역도서관위원회 당연직부위원장인 광역대표도서관장 그룹을 대상으로 의견과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표적집단면접을 실시하였다. 전문가 그룹 대상 표적집단면접을 실시하였다. 전문가 그룹 대상 표적집단면접은 광역대표도서관 및 광역도서관위원회 관련 연구자 1명, 도서관 관계 법·제도 연구자1명,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 및 광역도서관위원회 위원 1명 등 총 3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진행하였다. 그리고 「도서관법」에 따라 광역도서관위원회 부위원장이 되는 광역대표도서관관장 그룹을 대상으로 표적집단면접 진행하였다. 이에 광역대표도서관이 설치된 14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광역대표도서관 관장에 대하여 서면을 통한 면접을 요청 하였으며, 회수된 10개의 답변서를 분석하였다.

전문가 그룹과 광역대표도서관장 그룹에 대한 의견 및 자문 내용은 광역도서관위원회 운영을 위한 추진체계 및 구성, 광역도서관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지역도서관 정책 추진에 따른 광역대표도서관과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운영 관계, 도서관위원회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 광역도서관위원회 운영 개선 방안으로 두 개 그룹모두 동일하다.

조사 기간 및 방법은 전문가 그룹의 경우 2021년 10월 15일~10월 22일 까지 서면으로 진행하되 필요에 따라 전화를 통해 보완하였으며, 광역대표도서관장 그룹의 조사 기간은 2021년 10월 15일~10월 29일 까지이며, 조사 방법은 서면으로 진행하였다. 단, 조사 방법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 유지 준수와 시간적 제한으로 인해 서면으로만 진행하였으며, 필요에 따라 전화 통화를 통해 보완하여 의견과 자무을 받았다.

이에 광역도서관위원회 운영 개선을 위하여 전문가 그룹과 광역도서관위원회 당연직 부위 원장인 광역대표도서관장 그룹을 대상으로 의 견과 자문을 구하기 위해 표적집단면접을 실시 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광역도서관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위원 장과 부위원장에 대한 위계에 대해 조정할 필 요하다. 이에 전문가 그룹은 지역도서관 정책 을 결정하는데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 도지사의 참여를 위해 현행 부시장 • 부지사에 서 상향 조정하는 것을 제안하였으며, 광역대 표도서관 관장은 지역도서관 정책 실무책임자 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 다. 반면, 광역대표도서관장 그룹은 위원회 구 성에 있어 부위원장인 광역대표도서관 관장의 직급과 당연직 위원 간의 직급에 대한 차이에 따른 어려움으로 인해 위원장을 현재의 부시 장・부지사에서 국(局)장급으로 격하하거나 광역대표도서관 관장의 직급을 상향하는 것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둘째, 광역도서관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 해 국가도서관위원회와 같이 운영에 필요한 사 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률적 근거를 분명히 하고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강제성을 부여하도록 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의 「도서관법」에서는 위원회에 관한 기능과 역 할이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운영에 관 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뿐만 아니 라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실무협의회에 대한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도서 관법 에서 광역도서관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 정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를 근거로 자치법규를 통해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도서관 정책 추진에 따른 광역대표 도서관과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운영에 따른 관 계에 대해 두 그룹 모두 광역지방자치단체 본청 내 도서관 정책 부서 또는 광역대표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것을 비교 검토하여 이행하는 것이 필 요함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보면 광역도서관 위원회는 지역도서관 정책의 심의 기구로서 거 버넌스 역할을 하도록 하고 광역대표도서관은 지역도서관 정책을 수립하고 실무추진하는 역 할로 하되 광역대표도서관의 위상 제고와 광역 대표도서관 관장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도서관위원회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 영에 관하여 법률적 근거를 분명히 하고 그에 따른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도 서관위원회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법률적 근 거가 취약하며, 운영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되 지 못하고 있다. 또한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위원 장인 부시장 • 부지사의 도서관위원회의회 참석 이 어려워 부위원장인 광역대표도서관장의 대 리 참석함에 따라 도서관위원회협의회 · 실무협 의회 · 광역대표도서관 관장 회의의 차별성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5. 광역도서관위원회 운영 개선 방안 제안

광역도서관위원회 운영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관련 법제적 진단, 광역도서관위원 회 운영 실태조사, 관계 전문가 의견 및 실무협 의회 담당자인 광역대표도서관 관장 의견 수렴

을 실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도서관 정책을 포괄적으로 심의하며 광역대표도서관 및 관련 위원회 등과의 명확한 역할을 규명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정책협의를 통하여 주요 도서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광역도서관위원회 운영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광역도서관위원회 운영 개선을 위한 방안은 지역도서관 정책의 추진을 위한 중심축의 위치 에 따라 2가지 안으로 제시되며 이에 따른 「도 서관법」의 개정과 광역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를 통하여 광역도서관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포 괄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표준 자치법규(안) 의 제시가 필요하다.

5.1 광역도서관위원회 운영 개선 모델

이 연구에서는 지역도서관 정책을 포괄적으로 심의하며 광역대표도서관 및 관련 위원회 등과의 명확한 역할을 규명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정책협의를 통하여 주요 도서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광역도서관위원회 운영 개선을 위한 두 가지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5.1.1 제1안: 도서관 정책부서 중심 지역도서 관 정책 추진에 따른 광역도서관위원회 도서관정책 심의 기능 강화

제1안에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 내 도서관정 책 부서가 지역도서관 정책을 수립하고 광역도 서관위원회는 지역도서관 정책을 심의하며, 광 역대표도서관에서는 이를 시행하는 체제로 제 안하였다. 그리고 제1안에서와 같이 이와 함께 도서관위원회협의회 산하 실무협의회와 별도 로 지역도서관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위원회 산하에 지역도서관 정책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그림 1〉에서와 같이 본청 내 도서관 정책 부서 중심의 지역도서관 정책 추진을 위 한 광역도서관위원회 운영 개선 방안을 살펴보 면, 첫째, 광역도서관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관종별 도서관 관계자 또는 전문가를 안배하고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의 경우 정책 담당 부서 장으로 국장급 인력이 배치되도록 해야 한다. 「도서관법」에 따라 광역도서관위원회가 당해 광역지방자치단체 내 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 과 지식정보격차의 해소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 의하도록 하며, 이에 대해 위원회 운영 및 관계 회의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위원 구 성에서 이를 반영하여 구성할 필요가 있는 것 이다. 단,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 장은 현행 법률에서와 같이 부시장 • 부지사와 광역대표도서관 관장이 되도록 한다.

둘째, 광역대표도서관은 현재의 단일 사업소로서 본청 내 도서관정책 부서에서 수립한 지역도서관 정책을 시행하는 기관으로서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서 광역대표도서관에 대한 도서관정책 수립 및 시행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는 「도서관법」과 사업소에 대해 정책을 수립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과의 충돌을 회피하도록 한다.

셋째, 도서관정책부서는 지역도서관 정책을 수립하고 광역대표도서관과 정책 추진을 위한 정책협력 그리고 광역도서관위원회 및 지역도 서관 정책 실무위원회를 운영 및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이에 지역도서관 정책 강화를 위해 최소 과(科) 단위 조직 설치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지역도서관 정책 실무위원회를 광역도 서관위원회 산하 기구로 신설하여 광역도서관 위원회 안건에 대한 심의 사항 사전 검토 및 조 정과 조사 및 연구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 다. 따라서 위원장은 광역대표도서관 관장으로 하며 관종별 도서관 실무책임자, 관계 행정기 관 과장급 공무원을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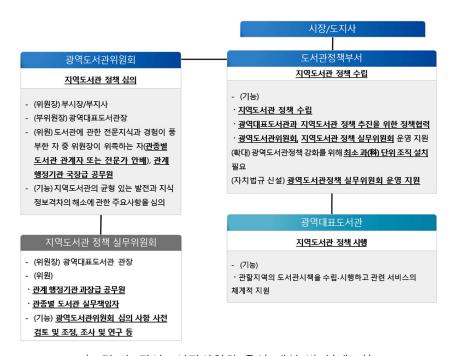
이를 종합하여 그림으로 도식화하면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5.1.2 제2안: 광역대표도서관 중심 지역도서 관 정책 추진에 따른 광역도서관위원 회의 거버넌스 역할 강화

제2안에서는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지역도서

관 정책 거버넌스의 역할과 광역대표도서관의 지역도서관 정책 수립 및 시행의 역할을 분명하게 규정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광역대표도서관의 지역도서관 정책 수립 및 시행에 대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조직 및 위상을 상향하여 직접 지역도서관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이와 함께 도서관위원회협의회 산하실무협의회와 별도로 지역도서관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광역대표도서관 산하 지역도서관 정책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제안하였다.

따라서 〈그림 2〉에서와 같이 광역대표도서 관 중심의 지역도서관 정책 추진을 위한 광역 도서관위원회 운영 개선 방안을 살펴 보면, 첫 째, 광역도서관위원회는 현행「도서관법」에서



〈그림 1〉 광역도서관위원회 운영 개선 방안(제1안)

규정하고 있는 기능으로서 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식정보격차의 해소에 관한 주요사항 을 심의하는 것 뿐만 아니라 위원회 위원 중심 으로 지역도서관 정책 거버넌스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체제로 운영해야 한다. 이에 위원 구성 에 있어 위원회 위원장은 「도서관법」 개정을 통해 현재 부시장 • 부지사에서 시장 • 도지사 로 재격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부위원장은 광역대표도서관 관장에서 도서관 관계 행정부 서 국(局)장급 공무원으로 하여 광역대표도서 관에서의 도서관정책에 대한 자기심의를 회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에 있어 당연직 위원의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도서관에 관 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되 관종별 도서관 관계자 또 는 전문가를 안배하여 위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광역대표도서관은 「도서관법」에서 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지역도서관 정책을 수 립 및 시행할 수 있도록 현행 사업소(4급 상당) 에서 사업본부(3급 상당)로 격상하도록 한다. 현재 광역대표도서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 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사업소로 지역도서관 정책을 수행할 수 없어 「도서관법」과 상충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0조 제5항에 따르면 시ㆍ 도가 특정 지역과 관련된 정책의 타당성 확보 와 현장에 맞는 정책 집행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책 기획 기능 등 본청의 기능을 현장에 위치 한 별도의 장소에서 수행하게 하거나 본청의 기능을 사업소의 기능과 통합하여 수행할 필요 가 있는 경우 지역본부를 설치 · 운영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 이에 광역대표도서관이 지역도서 관 정책을 직접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기 위 해서는 사업소에서 도서관 사업본부로 조직의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 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 정」에 따라 5개 과(科) 이상의 소관 업무가 있 는 경우 동규정 제9조제1항과 관련한 시ㆍ도의 실·국·본부 설치기준에도 불구하고 행정안 전부와 협의하여 3급 사업본부의 설치가 가능 하다. 그러므로 「도서관법」에 따른 광역대표도 서관의 역할을 위해서는 현재의 단일 사업소를 통해서는 불가능하며 제역할을 위해서는 직접 지역도서관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는 국 (局) 단위 사업본부의 설치 필요하다. 이때 광 역대표도서관의 관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0조 제6 항 관련 [별표 6] 사업본부·사업소 및 출장소 의 장 등의 직급기준 등에 따라 도서관 사업본 부장으로서 3급 또는 4급으로 임명할 수 있다. 따라서 광역대표도서관은 지역도서관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는 사업본부 형태로 조직 확대와 위상을 제고하고 내부에 도서관정책과 를 신설하여 지역도서관 정책 실무위원회의 운 영 지원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광 역대표도서관의 기능으로 「도서관법」에서 규 정되고 있는 지역도서관 정책을 수립 및 시행 그리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의 체계적 지원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지역도서관 정책 거버넌스 역할 수행에 따라 광역대표도서관에 서 수립된 지역도서관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 과 광역도서관위원회 심의 사항 사전 검토 및 조정, 조사 및 연구 등을 위해 지역도서관 정책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해야 한다. 위원 구성으로 위원장은 광역대표도서관 관장이 되며 위원은 도서관 관련 관계 행정기관 과장급 공무원과 관종별 도서관 실무대표자 등으로 한다.

넷째, 도서관정책 부서는 광역대표도서관의 지역도서관 정책 추진을 위한 정책협력 부서로 운영되도록 하며, 광역도서관위원회 운영 및 지원을 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종합하여 그림으로 도식화하면 다음의 〈그림 2〉와 같다.

5.2 광역도서관위원회 운영을 위한 법·제도 개선

이 연구에서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운영 개선을 위해 제안한 2가지 방안 모두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법·제도적인 개선이 필수적

이다. 이에 「도서관법」과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자치법규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

5.2.1 도서관법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운영 개선을 위해 제안한 2가지 방안 중 제1안은 현행「도서관법」의 개정을 필요치 않으나, 제2안에 있어서는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도서관법」개선이 필요하다. 개선의 내용으로는 위원회 기능에 대한 구체적사항의 규정과 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에 관한 규정의 개정이 요구된다.

이에 먼저 광역도서관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표적집단면접 결과 시사점에서 도출되었듯이 국가도서관위원회와 같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도서관법」에서는 광역도서관위원회의 기능으로서 지역도서관의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과 지역도서관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그림 2〉광역도서관위원회 운영 개선 방안(제2안)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광역도서관위원회가 중 앙행정기관과의 정책적 협의를 통해 지역도서 관 정책 대한 포괄적인 심의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점에서 해당 규정으로는 그 정체성이 명 확하지 않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광역지방자 치단체에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어 자의적 해석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는데 혼란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광역도서관위원회 운영 실태 조사 결과와 전문가 그룹 · 광역대표도서관 관장 그 룹 대상 표적집단면접 결과를 근거로 하여 유 사 위원회 기능에 대한 규정을 참고하여 「도서 관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광역도서관위원회 의 기능에 대한 사항에 대해 개정할 것을 제안 한다. 주요 기능으로 제15조에 따른 시도의 연 도별 시행계획 수립·추진 등에 관한 사항, 지 역도서관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 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지역도서관 운영평가 에 관한 사항, 지역도서관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국가도서관위원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을 제안한다.

한편, 이 연구에서 제안한 광역도서관위원회 운영 개선 방안 2에 따르면 위원회의 대표성 요 구와 지역도서관 정책에 대하여 광역대표도서 관이 수립하고 스스로 심의하는 오류를 회피하 도록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이에 광역도서관위원회가 지역도서관 정책 대한 포 괄적 심의와 거버넌스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위원장에 대하여 부시장・부 지사에서 시장・도지사로 격상하도록 하며, 부 위원장은 광역대표도서관 관장에서 도서관 소 관 정책 담당 부서의 책임자인 실・국장급 관 계 공무원이 선임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5.2.2 자치법규

광역도서관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도서관 법」에서는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치법규로 규 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앞서 광역도서관위 원회 관련 자치법규 실태를 분석한 결과 광역지 방자치단체별 관련 자치법규의 수준과 내용에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위원회의 기 능이나 위원 구성에 대해서 조차 규정되지 않고 있는 곳이 있다. 이에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운영 과 제 기능을 위해서는 「도서관법」에 근거한 자 치법규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도서관법」에 근거하여 광역도서관위원회 운영에 관한 자치법규(안)으로 설치, 기능, 구성, 위원장 직무, 회의, 임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비, 위원 해촉, 간사 및 서기, 지역도서관 정책실무위원회, 의견청취, 수당, 운영세칙 구성 등의 총 13개 조항을 제안한다.

5.3 행정조치

광역도서관위원회 운영 개선을 위해 제안한 제2안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광역대표도서관에 대한 지위를 현재 사업소(과 단위 4급 상당)에서 사업본부(실·국 단위 3급 상당)로 조직을 확대하는 행정적 조치가 필요하다.

현재 법률 상 광역대표도서관은 지역도서관 정책을 수립할 수 없으며, 일부 광역지방자치 단체를 제외하고 광역대표도서관 관장의 직급 이 4급(과장) 상당으로 지역도서관 정책에 관 한 의사결정 권한이 없다. 이에 앞서 위원회 운 영 실태조사 및 전문가 표적집단면접 결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서관법』에 따라 지역도 서관 정책을 총괄하는 광역대표도서관 관장이 광역도서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필요에 따 라 위원장의 업무를 위임받아 위원회 업무 및 도서관위원회협의회 참석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서는 광역대표도서관의 지위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광역대표도서관 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 요건 충족 시 조직을 확대하여 개편하도록 해 야 한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 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5개 과(科) 이 상의 소관 업무가 있는 경우 동규정 제9조제1 항과 관련한 시 · 도의 실 · 국 · 본부 설치기준 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3급 사 업본부를 설치할 수 있으므로 행정조치가 가능 하다

6. 결 론

광역도서관위원회는 2006년 전면개정「도 서관법」에 따라 도서관종합발전계획 시행 계 획 및 이행 실적을 포함한 지역도서관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법적 기구이며, 광역지 방자치단체가 설치하고 운영에 관하여 자치법 규를 통해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21 년 5월 말 기준으로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14곳만 광역도서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 며, 그 가운데에서도 8곳은 위원회의 법적 설 치 근거가 마련된 10년이 지나서야 설치하고 있다.

또한, 광역도서관위원회가 법적 근거에 따른 설치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실제적인 운영 파악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지역도서관 정책 심의 기구로서의 제역할을 하 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광역도서관위원회 운 영 개선을 위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광역도 서관위원회 관련 법제적 진단, 위원회 운영에 관한 기초 현황과 운영 실태조사, 관계 전문가 및 도서관위원회협의회 실무협의회 담당자 대 상 FGI를 통한 의견 수렴 등을 실시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광역도서관위원회 관련 「도서관법」 및 관련 광역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를 통한 법제 적 진단을 한 결과 위원회의 법리적 위상의 격 상 필요하며,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재 정립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광역도서관위원회 운영에 관한 기초 현황과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당연직 위원 구성에 따른 개선과 위촉직 위원 구성에 있어 다양한 관종의 의견을 통한 정책적 거버넌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안배할 필요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리고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주무 부서와 기능 및 역할에 대해 자치법규를 통해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셋째, 광역도서관위원회 관련한 전문가 및 도 서관위원회협의회 실무협의회 담당자인 광역대 표도서관 관장을 대상으로 표적집단면접을 진 행한 결과 법제적 진단 결과에서와 같이 광역도 서관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대한 법리적 위상의 격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광역도서관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도 구 체적인 규정이 요구되었으며, 도서관위원회협의 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에 대해서도 법률적 근거 를 분명히 하고 그에 따른 운영이 필요한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광역도서관위원 회의 운영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지역도서관 정책의 중심축에 따라 광역도서관위원회 운 영 개선 모델을 2가지 안으로 구분하여 제안하 였다.

첫째, 제1안의 모델은 본청 내 도서관 정책부서 중심으로 광역도서관 정책 추진에 따른 광역도서관위원회 도서관 정책심의 기능을 강화할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여기에서는 광역도서관위원회와 지역도서관 정책실무위원회를 본청 내 도서관 정책부서가 운영 지원하도록 하며 광역대표도서관은 지역도서관 정책의시행 기관으로 두고 있다.

둘째, 제2안의 모델은 광역대표도서관 중심 의 지역도서관 정책 추진에 따라 광역도서관위 원회는 정책 거버넌스 역할을 하도록 제안하였 다. 여기에서 광역대표도서관은 지역도서관 정 책의 수립 및 시행의 역할을 하며, 지역도서관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도서관 정책 실무위원회 운영 지원하도록 한다. 그리고 광 역도서관위원회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위원장 을 부시장·부지사에서 시장·도지사로 격상 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광역도서관위원회는 지역도서관 정책을 수립하는 광역대표도서관 관장이 부위원장으로서 자기 심의를 하지 않도 록 「도서관법」 개정을 통해 부위원장으로 본청 내 도서관 관련 부서의 국장급 관계 공무원으 로 제안하였다. 뿐만 아니라 광역대표도서관이 『도서관법」에서 명시한 제역할을 수행하고 지 역도서관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기 위해서는

단위 사업소에서 사업본부로 요건 충족 시 조 직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제안한 광역도서관위원회 운영 개선 방안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서는 「도서관법」과 위 원회 관련 자치법규의 개정 등 법ㆍ제도의 개 선이 필요하다. 이에 개선안 및 제2안에 따른 「도서관법」에서의 광역도서관위원회 기능에 대해 제15조에 따른 시도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추진 등에 관한 사항, 지역도서관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지역도서관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국가도서관위원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제안하였다. 그리 고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에 대한 시장・ 도지사로 격상과 부위원장에 대해 광역대표도 서관이 아닌 본청 내 도서관 소관 부서의 실ㆍ 국장에 해당하는 관계 공무원으로 제안하였다. 자치법규에 있어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별 광 역도서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에 관해 규정 된 자치법규의 수준과 내용의 차이가 있어 일 반적인 사항에 대해 표준화된 자치법규로 규정 될 수 있도록 이 연구에서 제안한 광역도서관 위원회 운영 개선 모델에 따른 표준 자치법규 (안)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광역도서관위원회 운영 개선을 위한 방안은 국가도서관위원회를 통한 국가도서관 정책과 광역도서관위원회를 통한 지역도서관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계가 되도록 하며 지역도서관 정책이 중심축에 따라 광역도서관위원회가 내실 있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참 고 문 헌

- [1] 김세훈, 심효정 (2008). 지역대표도서관 설립 및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9(1), 319-337.
- [2] 배순자 (2008). 지역대표도서관의 기능과 지역공공도서관과의 협력역할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 보학회지, 42(3), 45-59.
- [3] 윤희윤 (2017). 지역대표도서관의 법적 위상 및 핵심역량 강화 방안.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8(3), 1-21, http://dx.doi.org/10.16981/kliss,48,201706,1
- [4] 한복희, 이성숙, 이상호, 오종필 (2010). 지역대표도서관 중심의 도서관 협력체계 연구. 한국문헌정 보학회지, 44(1), 267-295.
-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1. 1. 17). https://www.law.go.kr
- [6] 의안정보시스템. (2021. 1. 17). http://likms.assembly.go.kr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1] Kim, Se-Hun & Sim, Hyo-Jung (2008).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the regional central library.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9(1), 319-337.
- [2] Bae, Soon-Ja (2008). A study on the function of regional central library and collaborative role for community public librar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2(3), 45-59.
- [3] Yoon, Hee-Yoon (2017). Reinforcing legal status and core competency of regional central library in Korea.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8(3), 1-21. http://dx.doi.org/10.16981/kliss.48.201706.1
- [4] Hahn, Bock-Hee, Lee, Sung-Sook, Lee, Sang-Ho, & Oh, Jong-Pil (2010). A study of the cooperative system models for the regional central librar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4(1), 267-295.
- [5] Korean Law Information Cemter of Reliable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021. 1. 17). https://www.law.go.kr
- [6] Bill Information (2021, 1, 17), http://likms.assembly.go.kr